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5. 22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5월 8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8년 5월 9일
- 다. 상정일자 : 제136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 (2008. 5. 2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세무2과장 유 병 현

가. 제안이유

서울시 도시경쟁력 제고 및 “2010년 외국인 관광객 1,200만명 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관광호텔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인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신설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통보되어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 골자

○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신설

(안 제14조의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토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관광호텔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재산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2008. 3. 1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첩·통지됨에 따라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규정을 신설하고 적용시한을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